

보도 시점 2024. 1. 18.(목) 10:00 배포 2024. 1. 18.(목) 08:00

[2024년 국세청 정책 돋보기]

올해 1월분 소득부터 「인적용역 기타소득자·스포츠강사」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, 미리 준비하세요!

- 실시간 소득파악 확대 시행, 고용보험 등 복지인프라 구축 폭넓게 지원 -

- 국세청(청장 김창기)은 '21년 7월부터 「실시간 소득파악 제도」를 도입하여 국가 복지인프라 구축에 필요한 소득자료*를 매월 수집하고 있으며,
- *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, 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,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
- '24년 1월부터는 실시간 소득파악 대상이 확대되어 '인적용역 기타소득자' 및 '스포츠강사'의 소득자료도 매월 수집합니다.

'24년부터 달라지는 제도

① 인적용역 기타소득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

- '24년 1월 이후 아래 인적용역 기타소득(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)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
| 인적용역 기타소득 |

- ▶ 고용관계 없이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강연료 등 대가를 받는 용역
- ▶ 라디오·TV방송 등을 통하여 해설·계몽 또는 연기의 심사 등을 하고 보수 등의 대가를 받는 용역
- ▶ 변호사, 공인회계사, 세무사, 건축사, 변리사 등이 그 지식 등을 활용하여 보수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- ▶ 그 외 고용관계 없이 수당 등의 대가를 받고 제공하는 용역

- 대신, 「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」를 매월 모두 제출한 경우에는 연 1회 제출하는 「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」 제출을 면제합니다.

| 인적용역 기타소득 소득자료 제출 예시 |

지급연월	소득자료	제출기한	비 고
2023년 연간	지급명세서	2024년 2월 말일	연 1회
2024년 1월	간이지급명세서	2024년 2월 말일	매월
2024년 연간	지급명세서	제출면제	매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

- 그러나, 「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」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* 지급액×가산세율(0.25%,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한 경우 0.125%)

- 다만, '24년도 중에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지급하고 '25년 2월 말일까지 「거주자의 기타소득 지급명세서」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「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」를 미제출하더라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.

②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 매월 제출

- '24년 1월부터 스포츠강사 등에게 사업장을 제공하는 사업자¹⁾ 등은 스포츠강사 등의 소득²⁾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「사업장 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」를 제출해야 합니다.

1) 스포츠강사가 용역을 수행하는 장소(골프연습장, 헬스클럽 등)의 운영 사업자

2) 스포츠강사가 고객으로부터 직접 받아 원천징수 되지 않은 소득만 해당

| '24년 1월 소득분 소득자료 제출 예시 |

소득자	소득자료 제출의무자	소득자료	제출기한
스포츠강사	스포츠강사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 중개한 사업자(골프연습장, 헬스클럽 등)	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제출명세서	2024년 2월 말일

- 스포츠강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성실하게 제출하는 사업자는 세액공제*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* 제출기한까지 전자 제출 시 : 용역제공자 인원수×300원(최대 200만 원 한도, 최소 1만 원 공제)

- 소득자료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에는 제출 의무자에게 과태료*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* 과세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: (미제출) 20만 원, (허위제출) 10만 원

③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'26년부터 매월 제출

- '24년 1월 시행 예정이었던 상용근로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은 '26년 1월로 시행 시기가 유예되었으니 '25년 말일까지는 종전과 같이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.

소득자료 제출 방법 및 유의사항

- 소득자료 제출은 홈택스(손택스)를 통한 전자제출 방법을 이용하시면 세무서 방문 없이 언제 어디서나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.

| 소득자료 제출 방법 |

제출방법	접근경로
전자제출	홈택스·손택스 로그인 → 지급명세서·자료제출·공익법인 → (일용·간이·용역)소득자료 제출
서면제출	우편 또는 세무서 방문(서식 다운로드 : 국세청 누리집>국세정책/제도>세무서식)

- 소득자료가 고용보험 가입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소득자의 소득 종류에 맞는 정확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- 예를 들어 전문 강사처럼 인적용역을 계속적·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‘인적용역 기타소득자’가 아닌 ‘인적용역 사업자’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.
- 또한,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에게 소득을 지급하고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‘용역제공자’ 소득자료가 아닌 ‘인적용역 사업자’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.
- 다만, 사업장제공자가 스포츠강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‘일용근로자’ 또는 ‘상용근로자’의 소득자료를 제출합니다.

제도 정착을 위한 노력

- 국세청은 제출의무자의 소득자료 성실제출을 지원하고 매월 제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'23년 12월부터 「미리채움 서비스¹⁾」를 시행하고 있으며, 「전자제출 화면통합²⁾」으로 쉽고 편리한 제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.
- 1) 전월 제출한 소득자료 내용을 미리 채워(Pre-filled)주고 변경사항만 수정하여 바로 제출
- 2) 여러 종류의 소득자료를 제출할 경우,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제출하도록 통합
- 아울러 매월 소득자료 제출에 따른 사업자 부담 등 현장의 어려움을 지속 수집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복지인프라 구축에 차질이 없도록 「실시간 소득과약 제도」(RTI)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.

담당 부서 <총괄>	복지세정관리단 소득자료관리과	책임자	과 장	남영안 (044-204-3841)
		담당자	사무관	김상인 (044-204-3852)
			사무관	김성엽 (044-204-3857)
			사무관	유종호 (044-204-3862)
<협조>	정보화관리관 홈택스2담당관	책임자	과 장	이준목 (044-204-2551)
		담당자	사무관	권현옥 (044-204-2592)



참고 1

자주하는 질문 FAQ

Q1	'24년 1월 지급분부터 모든 기타소득에 대해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나요?
A	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*만 매월 제출 대상입니다. 자산 또는 권리의 양도·대여·사용의 대가로 받는 금품, 복권 등에 당첨되어 받는 금품 등 다른 기타소득은 매월 제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종전과 같이 연 1회 지급명세서만 제출하는 것입니다. *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 해당 소득(예시 : 일시적인 강연료, 자문료 등)
Q2	'24년 1월에 발생한 인적용역 기타소득을 '24년 3월에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는 언제까지 제출하나요?
A	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기타소득)는 지급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므로 '24년 4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입니다.
Q3	'24년 1월 소득 발생 분부터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는 업종에 포함된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는 누구를 의미하나요?
A	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직접 받아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를 의미하며, 골프강사, 체력훈련가, 에어로빅강사, 헬스트레이너, 스포츠폀레이너 등입니다.
Q4	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 소득자료인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는 누가 제출하나요?
A	스포츠강사 및 트레이너의 용역 제공과 관련하여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해당 용역을 알선·중개하는 자가 제출하는 것입니다. 예를 들어 골프강사에게 골프강습과 관련하여 골프연습장을 제공한 경우 골프연습장 사업자가 해당됩니다.
Q5	용역제공자인 골프강사가 강습대가 중 일부는 고객에게서 직접 받고 일부는 사업장 제공자인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경우 제출할 소득자료는 무엇인가요?
A	고객으로부터 직접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'사업장제공자등의 과세자료 제출명세서'를 제출해야 하고, 골프연습장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해서는 '간이지급명세서(거주자의 사업소득)'를 제출해야 합니다.

미리채움 서비스 · 전자제출 화면통합

① 미리채움 서비스

- **(개요)** 소득자 정보, 지급내역 등 전월 제출 내용을 “**미리채움(pre-filled)**” 방식으로 사업자에게 제시하여 **변동사항만 수정**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할 수 있는 서비스
- **(효과)** 동일한 소득정보를 매월 입력하는 불편 해소, 소득자료 제출 누락 사전 방지, 소득자 수가 많지 않고 매월 지급액이 유사한 **소규모 영세사업자의 제출편의 향상**

개선 전

④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

① 사업장 계급자 등의 과세자로 제출명세서

작성업로드
제출완료자료로로딩중
미리채움(전달자료로로딩)

성명 *		경력		선택자료작성	전체자료작성	10가지 보기 ▼	확인	
☐ 번호	수정	주민등록번호	성명	내/외국인	용역구분	용역 제공기간 개시일 종료일	용역제공 월수(횟수)	용역제공 대가

모든 정보를 직접 입력

• 총 입력건수 : 0건
• 총 인원 (총월인 중복제거) : 0명
• 총 지급액 : 0원

1 중(연)(기)

▶ 소득자 연락처 및 소득 내역

소득내역만 새로작성하기
전체 새로작성하기

내/외국인	내·외국인 선택	주민등록번호	940801-1***형*회원	성명	홍길동
용역구분	용역구분 선택 ▶	용역제공기간	2023-08-01 ~ 2023-08-31		
용역제공월수 (회수)	8 일 횟수 10			용역제공대가	1,000,000 원

등록하기

개선 후

➔ 지급명세 상세내역 작성하기

미리채움 서비스

●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 내역

"전월 제출자료를 불러옵니다"

총 입력건수: 3건

총 인원(동일인 중복제거): 2명

선택한 자료 삭제 (단위: 원)

선택 삭제	수정	성명	내/외국인	주민등록번호	지급월	근무월	근무일수	과세소득	비과세소득	소득세	지방소득세
	1. 수정 버튼 클릭			810502-*****	02	01	10	100,000	0	0	0
☐	수정	황**	내국인	940623-*****	02	02	20	300,000	100,000	4,050	400
☐	수정	필**	외국인	690205-*****	02	01	15	250,000	0	0	0

1 총 3건

● 소득자 인식사항 및 소득내역

2. 변경내용만 수정

(단위: 원)

내/외국인	☑	여	부	주민등록번호	(예, 최종근무일만 다른경우)	전화번호	010 - 1234 - 5678
근무월	03월	*		최종근무일	2023-03-25	근무일수	20 일
과세소득	300,000 원			비과세소득	100,000 원	소득세	4,050 원
						지방소득세	400 원

3. 등록

등록하기

2 전자제출 화면통합

- **(개요)** 매월 제출하는 여러 소득자료를 불필요한 화면이동 없이 하나의 화면에서 보다 편리하게 제출하도록 개편
- **(효과)** 입력화면 통합으로 **【이전단계】**, **【다음단계】**로 화면이동을 하지 않아 소득 자료 제출 편의성 제고 및 제출시간 단축

개선 전(3개 화면)

3개 화면으로 구성

[1.기본사항 입력 → 2.상세내역 입력 → 3.제출]

Step1: 소득자료등록

1. 기본사항 입력

2. 상세내역 입력

3. 소득자료 등록

다문화센터 생활지원금신청서

화면1. 기본사항 입력

가) 개인정보

1. 주민등록번호: 12345678901234567890

2. 성명: 김민서

3. 생년월일: 2000-01-01

4. 성별: 여

5. 주소: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3

6. 연락처: 010-1234-5678

7. 이메일: kimminse@gmail.com

8. 직업: 프리랜서

9. 학력: 고졸

10. 종교: 불교

11. 배우자: ○

12. 자녀: ○

13. 장애인: ○

14. 기타: ○

15. 신청사유: 다문화가족지원사업

16. 신청일자: 2023-01-01

17. 신청처: 서울특별시 강남구

18. 신청인: 김민서

1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3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4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5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6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7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8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9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0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1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2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3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4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5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6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7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8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19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0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1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1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2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3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4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5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6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7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8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29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30. 신청인직책: 대표이사

231

개선 후(1개 화면)

한 화면으로 통합 [작성내용 없이 작성-제출]

직접작성 제출

변경파일 제출

제출내용이 조회

☒ 사업자 기본사항 입력 [1월 정기제출] 1월 3일 ~ 3월 31일 [2월 정기제출] 2월 1일 ~ 2월 29일
 다른 지급명세서 작성하기

●●●●●●●●●●
작성
제출호(제출번호)

(지급명세서 선택)

 동국공로소득 지급명세서 ▼
 신뢰의 위험을 부담하오니 주의하십시오

제출구분 (7)
* 정기구분
@ 수당명고
◎ 가점명고
2023년
월
12
일

상세내역 작성하기

☒ 지급명세서 상세내역 작성하기
 작성중의작성
처리대행(한달미료로만요구)

☒ 일원공로소득 지급명세서
 작성중의작성
처리대행(한달미료로만요구)

성명 ▼
한씨

주거임대
생애주거세액
친제거주세액
10개의 보기
▶▶▶▶

□	번호	수정	주원번호번호	성명	내외 국인	지급 월	간부 월	하등 간부월	과세소득	비과세소득	합계합산세액	
□	1	수정	621025-*****	BLA****	내국인	12	11	02	11,111	0	0	0
□	2	수정	800101-*****	1종일등	내국인	12	11	01	111	0	0	0

● 총 입력건수 : 2건
● 총 원할 (총일하는 중)비율 : 2명
● 총 지급액 : 11,222원

☒ 제출하기

· 제출구분 : 내수당 - 기본소득 제출은 입력 여러 번 제출하는 경우 무효로 제출한 것으로만 유효합니다.

· 제1회 소득 지급명세서 : 2023년 4월 20일(금요일) 24:00까지(2023년 4월 30일) 이후

· 미제출 또는 불성실제출 시 가산세 부과될 수 있습니다.

☐ 위 제출내용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.

제출한 뒤보기
제출하기

☒ 일여 보기 일여하기